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22.

조승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8.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 11. 12.)

- 제11차 정무위원회(2025. 11.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조승래의원)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25전쟁 7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 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